

GENERAL ORDER



Title: 물리력 사용(Use of Force)

No: GO-PER-901.07

DISTRICT OF COLUMBIA

I.	Background	Page	2
II.	Policy	Page	2
III.	Definitions	Page	2
IV.	Regulations	Page	5
V.A	De-Escalation	Page	5
V.B	Justification	Page	5
V.C	Response	Page	5
V.D	Excessive Force	Page	5
V.E	Use of Force Framework	Page	5
V.F	Conditions that May Authorize the Use of Non-Deadly Force	Page	8
V.G	Conditions that May Authorize the Use of Deadly Force	Page	9
V.H	Less Lethal Weapons	Page	10
V.I	Positional Asphyxial Precautions	Page	10
V.J	Neck Restraints	Page	10
V.K	Use of the Department-Issued Firearm	Page	11
V.L	Carrying Prohibited Weapons	Page	12
V.M	Pain or Injury Associated with Handcuffing	Page	12
V.N	Handcuff Prohibition	Page	13
V.O	Civilian Employees of the Department	Page	14
V.P	Reporting Use of Force Incidents	Page	14
V.	Attachments	Page	14
VI.	Cross References	Page	14

I. 배경(Background)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은 ‘콜럼비아 특별 행정구 규정’(DCMR) 6장, 미국 연방 헌법 수정조항 제 4조 및 기타 DC 공식 법(DC Official Code)의 여러 가지 조항에 요약되어 있다. ‘콜럼비아 특별 행정구 규정’(District of Columbia Code of Municipal Regulations)은 ‘경찰의 물리력 사용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물리력의 적정 수준을 허용하는 상황’ 및 ‘총기 발사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연방 헌법 수정조항 제 4조는 국민들에게 "시민의 안전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

(framework)를 제공하는데, *Graham v. Connor* 490 U.S. 386 (1989)¹⁾의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객관적 타당성" 표준("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을 포함하고 있다. 이 훈령의 목적은 경찰이 언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II. 정책(Policy)

MPD 정책은 특히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할 때,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항상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MPD 경찰은 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찰이 사건이나 사람을 효과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면서 경찰 및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 폭력 상황에 대응되는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을 위해, 또는 자신이나 사람에게 직면한 위협에 비례하는 물리력 사용을 위해, 위협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재평가하면서 그에 맞는 물리력을 최종 사용해야 한다.

III. 정의(Definitions)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지정된 의미를 지닌다:

1. 적극적인 저항(Active resistance) - 경찰의 제압 시도를 물리적으로 회피하려는 움직임. 예를 들어, 버텨주기, 몸을 딱 긴장한 채 있기, 밀기, 또는 구두로 잡히지 않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등이 해당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경동맥 누르기(Carotid artery hold("sleeper hold" or "v hold")) - 물리력 대상자의 움직임을 제압할 목적으로 또는 뇌의 혈류를 조여 무의식 상태로 만들기 위해 물리력 대상자의 경동맥, 경정맥, 목의 옆면을 힘으로 눌러 저항을 통제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기법(D.C. Official Code, § 5-125)
3. 덜 치명적인 무기(Less lethal weapon) - 사망을 유발하지 않고 물리력 대상자의 위협을 무효화할 의도나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물건 또는 장치(예: 고무 총탄, 올레오레신 고추 스프레이, 경찰봉)
4. 직원(Member) - MPD 경찰관 및 행정관 또는 MPD 자율방범대(MPD Reserve Corps)
5. 치명적이지 않은 물리력(Non-deadly force) - MPD 교육에 따라 사용되는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 부상을 유발할 의도가 없는 물리력
6. 객관적 타당성(Objective reasonableness) - 특정 물리력 사용의 타당성 기준은 경찰이 처해 있는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그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1) *Graham v. Connor*, 490 US 386 (1989)는 경찰관(Connor)이 체포, 수사, 압수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시민(Graham)의 주장에 객관적인 타당성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한 미국 대법원 판례

7. 저항하는 상황에서 수갑 채우기(Resisted handcuffing) - 경찰이 수갑 채울 때 물리력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할 때 발생한다. 또한 경찰이 수갑을 채우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해 물리력 대상자의 팔목이나 팔, 신체를 움직이게 할 때 발생한다. “저항(resistance)”의 범위는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물리력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에서, 자신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딱 고정적으로 있는 것(locking)” 까지를 말한다.

8. 심각한 신체 부상(Serious physical injury) - 병원 입원 또는 상당한 사망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상처, 의식 불명, 장애, 골절, 신체 부위 또는 장기의 기능 장애 및 손상 등을 초래하는 부상 또는 질병

참조: 병원 입원은 경찰의 물리력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물리력 사용 이전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치료는 해당하지 않는다(예, 약물이나 알코올, 고혈압 등의 의학적 상태)

9. 심각한 물리력의 사용(Serious use of force) - 다음과 같은 경찰의 행동을 포함 한다:

- a. 사격장, 훈련장 및 동물에게 행하는 총기발사를 제외한 모든 총기발사
- b. 심각한 신체 부상을 초래하는 모든 물리력;
- c. 경찰장구(경찰봉, 나이트스틱)로 머리 강타;
- d. 의식 불명, 사망위험, 심각한 신체손상, 신체 또는 장기 기능 일부의 장애 또는 손상을 일으키는 모든 물리력;
- e. MPD 경찰견이 사람을 무는 모든 사건;
- f. 목 누르기 또는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기법 등의 물리력
- g.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물리력

10. 경찰 직무용 무기(Service weapon) - 물리력 대상자를 통제하고 제압하는데 사용하도록 MPD가 허가하고 배포하여 경찰이 휴대 및 즉시 사용가능한 모든 도구

11. 테이크 다운²⁾(기습제압)(Take down) - 물리력 대상자를 물리적으로 땅에 끌리게 하는 행위

12. 기도 꺾기(Trachea hold(“arm bar hold” or “bar-arm hold”)) - 물리력 대상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호흡기관의 공기 흐름을 막아 무의식 상태로

2) 테이크다운 기법(takedown): 레슬링에서 상대선수를 재빨리 쓰러뜨리기

만들기 위해 경찰이 자신의 팔, 길거나 짧은 경찰봉, 손전등 또는 기타 단단한 물건으로 물리력 대상자의 기도, 호흡기관, 목의 앞부분을 눌러 제압하려는 모든 기법(D.C. Official Code, § 5-125.02)

13. 물리력의 사용(Use of force) - 경찰 명령에 따르도록 물리력 대상자를 설득 하는데 이용하는 모든 물리적 강요

a. 다음의 행위는 “보고 의무가 있는 물리력의 사용”(reportable uses of force)에 해당 한다:

(1)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사용

(2) 심각한 물리력의 사용

(3) 덜 치명적인 무기의 사용(Use of a less-than-lethal weapon)

(4) 잠재적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

(5) 경찰의 물리력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상 또는 통증을 제기 하는 물리력의 사용

b. 다음의 행위는 물리력의 사용으로 인해 부상이나 통증이 발생하지 않지만 “보고 의무가 있는 물리력의 사용”(reportable uses of force)에 해당 한다:

(1) 경찰 혼자 또는 팀으로 하는 기습제압으로 부상이나 통증 호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기타 다른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은 채, 사람 또는 그 방향으로 총을 빼서 겨누는 행위

참조: 수갑 착용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부상이나 가벼운 통증 자체는 “보고 의무가 있는 물리력 사용” 또는 “보고 의무가 있는 물리력 사용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물리력 사용 체계(Use of force framework) - 의사결정 모델(첨부 A)을 변형해 향후 물리력 사용을 초래하는 상황에 적용 하게 한 체계. 물리력 사용 체계(use of force framework)는 인지된 위협 및 대응의 5가지 범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모두는 유동적이고, 동적이며 비순차적이다. 물리력 사용체계(use of force framework)를 이용해 경찰관은 인지된 위협에 따라, 객관적이며 타당한 물리력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5. 잠재적 범법행위를 나타내는 물리력의 사용(Use of force indicating potential

criminal conduct by a member) - 수갑을 채운 물리력 대상자를 가격, 타격, 발로차기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또한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제기된 고소 및 기소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찰관이 물리력을 사용한 상황을 판단해 볼 때 **명백히** 과도하다고 여기거나 또는 범법 행위의 수준이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리력이 해당한다.

16. 차량 돌진 공격(Vehicle ramming attack) -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군중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려는 의도로 차량을 돌진하는 공격 형태

IV. 규정(Regulations)

- A. 폭력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경우 또는 합법적인 체포에 저항하는 경우, 경찰은 가능한 한 먼저 조언, 경고, 구두 설득, 전략적 의사소통 또는 기타 단계적 상황 완화 기법을 통해 그 상황을 진정시키려 해야 한다. 경찰은 가능하면 단계적 상황 완화 기법을 사용해 물리력 사용 상황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B.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자신이 사용한 전략, 의사결정 방식, 사용된 물리력의 정도와 함께 그 상황에 대한 사실과 정황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C.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경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1. 물리력 대상자가 치료가 필요한지 육안 및 구두로 점검해야 한다.
 - 2. 물리력 대상자가 부상을 입었거나 통증을 호소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을 보이면 GO-PCA-502.07(수감자 치료 및 입원)에 따라 즉시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 3. 상황이 제압돼 안전해지면 즉시 응급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D. 경찰관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면 징계조치 및 형사고발 또는 민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E. 물리력 사용 체계(use of force framework)(첨부 B)
 - 1. 물리력 사용 체계(use of force framework)는 인지된 위협 및 대응의 5가지 범주를 포함하며, 이 모두는 유동적이고, 동적이며 비순차적이다.
 - a. 위협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 (1) 협조적(Cooperative) - 물리력 대상자는 경찰이 다가왔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경찰의 구두 요청 및 명령에 쉽게 응한다. 경찰이 제압하고 수색할 때 저항하지 않는다.

- (2) 수동적 저항자(Passive resister) - 물리력 대상자는 낮은 수준의 저항을 나타낸다. 저항은 수동적이며 물리적이거나 기계적인 힘을 쓰지 않는다. 경찰의 합법적인 요구나 명령에 대답하지 않고 말로 따진다.
- (3) 적극적 저항자(Active resister) - 물리력 대상자는 비협조적이며 경찰의 요구나 말에 따르지 않는다. 물리력 대상자는 물리적이거나 기계적인 저항을 통해 경찰의 제압시도를 피하려 한다. 예를 들어, 버티기기, 몸을 꺾긴장한 채 있기, 밀기, 또는 구두로 잡히지 않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등이 해당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4) 공격적(Assaultive) - 물리력 대상자는 단순한 비협조적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경찰관의 체포 시도에 저항한다. 물리력 대상자는 경찰관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부족하지만 경찰관 혹은 사람이 즉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 (5) 심각한 부상 또는 죽음(Serious injury or death) - 물리력 대상자는 자신이 아닌 경찰관 혹은 사람을 즉각적인 사망의 위험 또는 중상에 처하게 한다. 이러한 행위에는 경찰관이나 사람을 즉시 사망이나 중상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다.

b. 경찰관의 물리력 대응:

- (1) 협조적 제압(Cooperative controls) - 물리력 사용 체계(use of force framework)에서 경찰관이 최소한의 신체적 힘을 사용하는 범주(category). 협조적 제압에는 물리력 대상자가 협조적이어서 의사소통 기술로 제압이 가능하며 또한 MPD 교육 및 표준서에서 지시한대로 제스처, 자세, 얼굴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위로도 종종 제압이 된다.
- (2) 접촉 제압(Contact controls) - 제압을 하고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낮은 수준의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전략. 접촉 제압(contact controls)은 신체(예, 부드럽게 맨손으로 제압하기, 꺾잡기, 데리고 가기)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물리력 대상자를 설득(예, 강한 언어적 설득)한다. 또한 MPD 교육 및 표준서에 따라 추가적으로 구두로 설득하는 능력도 포함하며 경찰이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경찰 지원팀을 기다리는 것도 접촉 제압에 해당한다.
- (3) 컴플라이언스 기술(Compliance techniques) -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물리력 대상자를 부상 입히거나 혹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게 하는 행위(예, 팔끼기(control holds), 관절끼기(joint locks), OC 고춧가루 스프레이(oleoresin capsicum(OC) spray), 경찰관 단독으로 혹은 팀으

로 제압하기)). 그러나 MPD 훈련 및 표준서에 따라 수행하면 물리력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부상을 입지 않는다.

(4) 방어 전략(Defensive tactics) - 강제로 물리력 대상자를 굴복시키지만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방어 전략의 목적은 주로 경찰 및 사람의 안전이며 예를 들어, MPD 훈련 및 표준서에 따라 ASP 경찰봉으로 때리기, 최루성 화학작용제(chemical agents), 전기충(ECDs, electronic control devices) 사용 등이 해당한다.

(5)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 부상을 일으키는 물리력의 사용. 치명적인 물리력 사용의 주요 목적은 물리력 대상자가 경찰이나 사람을 즉각적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에 처하지 못하도록 무력화하는 것이지만, 물리력 대상자에게만 상황이 위협적인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총기(firearm)를 사용하거나 물리력 대상자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기 등이 포함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2.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경찰이 인식하는 경우, 물리력 사용체계(use of force framework)에 따라 위협의 수준에 비례한, 적절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물리력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위협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자신의 권한 및 MPD 정책을 고려하고, 선택사항(option) 및 우발상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고 검토를 하고,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위해 경찰은 다음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1) 범죄의 심각성, 혐의자의 위협 또는 저항의 수준, 혐의자의 정신 능력, 혐의자의 무기에 대한 접근성, MPD 정책 및 가능한 선택사항(예, 전문 교육을 받은 직원에게 연락)을 고려한다.

(2) 혐의자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경우 혐의자의 저항에 비례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물리력을 사용한다.

(3) 혐의자의 저항 수준에 따라 물리력 사용 수준 또한 수정한다. 혐의자가 저항을 덜하면 물리력의 유형이나 수준을 낮춰야 하며, 반대로 저항의 강도가 세지면 그에 맞게 객관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대응할 권한이 있다.

(4) 동료가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리력 남용을 하는 것을 본 경우 개입하고 이후에 보고한다.

3. 필요한 훈련이나 기술을 교육 받지 않고, 또한 무기 사용을 허가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때, 제압기법이나 방어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선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또한 위협수준을 감안할 때 물리력 사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민이나 경찰이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당할 임박한 위협에 처한 경우,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F. 비치명적인 물리력의 사용 권한 조건(Conditions that May Authorize the Use of Non-Deadly Force)

1. 경찰이 비치명적인 물리력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 중 한 개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 a.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 b. 법률에 근거한 체포를 위해;
 - c. 경찰의 보호조치(in custody)하에 있는 사람의 도주를 막기 위해;
 - d.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또는 저항하는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또는
 - e. 도주자의 합법적인 정지를 위해.
2. 경찰은 상황을 제압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물리력 대응을 해야 한다. 물리력 사용의 단계적 축소 전략(de-escalation tactics)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물리력 대응 수준이 경찰이 인식하고 있는 위협에 비례한다면 물리력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상황이 제압되면 물리력 대응 수준 또한 비례해서 축소해야 한다.

G. 치명적인 물리력의 사용 권한 조건(Conditions that May Authorize the Use of Deadly Force)

1. 치명적인 물리력의 사용 권한
 - a. 생명 방어

경찰은 다음의 상황에서 직무 수행 시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1) 필요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할 때; 그리고

(2) 경찰 자신이나 사람을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 부상을 일으키는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적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그리고

- (3) 다른 모든 선택사항을 사용했거나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b. 도주하는 흉악범(Fleeing Felon)

도주하는 흉악범을 체포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체포할 수 없거나 또는 도주를 막을 수 있는 기타 다른 합리적인 수단을 전부 사용했을 경우만 사용한다 ; 그리고

- (1) 도주하는 혐의자가 경찰 및 사람에게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 부상의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 또는
- (2) 도주하는 혐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사망이나 중상을 일으킨 흉악범죄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그리고
 - (a) 도주자가 범죄를 저질렀고 저지르려 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그리고
 - (b) 도주자를 즉시 체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나 시민을 즉각적인 사망이나 중상 위협에 빠뜨릴 때; 그리고
 - (c)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할 경우 무고한 시민의 생명이 위협에 처하지 않을 때

2. 치명적인 물리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Unauthorized Use of Deadly Force)

- a. Part IV.G.1에 기술된 것 이외에 어떤 상황에서도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b. 경찰은 자신에게만 위협의 위협이 되는 물리력 대상자에게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H. 덜 치명적인 무기(Less Lethal Weapons)

- 1. 덜 치명적인 물리력 사용의 목적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물리력 사용 확대를 막는데 있다.
- 2. 덜 치명적인 물리력 사용은 적절한 전문 교육을 받은 경찰만 사용할 수 있다.
- 3. 시민이 경찰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MPD SOP-16-01(수정헌법 제1조

‘집회와 표현의 자유’ 처리절차, Handling First Amendment Assemblies and Mass Demonstrations)에 따른 ‘물리력 사용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I. 자세에 의한 질식 예방 조치(Positional Asphyxia Precautions)

1. 질식을 막기 위해, 경찰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가능한 경우, 물리력 대상자의 호흡 능력을 저해하는 흉부 또는 목의 압박 또는 기도 막힘을 일으키는 전략을 피해야 한다.
- b. 수갑이나 다른 적법한 방법으로 물리력 대상자를 제압하여 구금한 경우,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 c. 물리력 대상자가 호흡 곤란을 겪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하며, 상관(official)은 적절한 경우 구금을 지속할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2. 경찰은 다음을 해서는 안 된다:

- a.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수갑자를 장시간 또는 이송 중에 옆드린 자세(즉,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로 두는 것. 가능한 경우, 물리력 대상자의 호흡 능력을 저해해 흉부 또는 목의 압박 또는 기도 막힘을 일으키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 옆드린 자세는 ‘자세에 의한 질식사’(positional asphyxiation)라는 ‘질식’을 일으키는 요소이므로 수갑자가 옆드린 자세로 있는 동안 주의 깊게 감시해야 한다.
- b. 호송차량으로 물리력 대상자를 이송하는 동안 승인되지 않은 구속 장치를 사용 하는 것
- c. 다리와 손을 서로 가깝게 하는 방식(예, 돼지 네발 묶기)으로 수갑 또는 플렉스 수갑(flex-cuffs)을 다리 구속 장치에 묶는 행위.

J. 목 구속 장치(Neck Restraints)

1. D.C. 공식 법 §5-125.02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trachea holds”(기도 누르기)와 “carotid artery holds”(경동맥 누르기)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목 구속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승인되지 않은 물리력 사용이며 이를 금지한다.

참조: 경찰은 D.C. 공식 법 §5-125.02, et seq.(호흡기관을 이용해 제압하는 것을 제한, Limitation on Chokehold)에 명시된 대로, 특정 유형의 목 구속 장치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으며 “기관지 누르기”(trachea hold)나 “경동맥

누르기(carotid artery hold)”를 사용하는 것 또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있다.

2. 목 구속 장치나 목 주위 호흡기관 제압(chokehold)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곧바로 응급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K. MPD가 지급한 총기의 사용(Use of the Department-Issued Firearm)

1. 가능한 경우,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총기를 발사하기 전에 구두 경고를 해야 한다.
2. 경찰은 다음의 상황에서 총기를 발사해서는 안 된다:
 - a. 경고로서;
 - b. 군중에게;
 - c. 실제로 공격 하지는 않지만 위협적 공격을 내포하는 중범죄 사건의 경우에, 위협적 공격이 임박하고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 부상을 일으킨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d.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모든 경범죄의 경우;
 - e. 단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경우; 또는
 - f. 개인이 도망쳤다는 단지 그 범죄 혐의로 그 개인을 멈추게 하기 위해.
3. 경찰은 치명적인 물리력이 자신이나 사람에게 사용되지 않는 한, 운행 중인 차량을 향해 또는 운행 중인 차량에서 총기를 발사해서는 안 된다. 이 훈령의 목적상, 운행 중인 차량이 “차량을 돌진해 공격하기”(a vehicle ramming attack)를 행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타당성이 없는 경우, 운행 중인 차량을 치명적인 물리력으로 여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경찰을 향해 돌진하게 하는 전략을 피해야 한다.
4. 경찰은 치명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준으로 상황이 확대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사람을 향해 또는 그 사람 방향으로 총기를 꺼내 겨누어서는 안 된다.
 - a. 치명적인 물리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총기를 안전하게 놓거나 총집에 넣어야 한다.
 - b. 사람을 향해 또는 사람 방향으로 총기를 꺼내 겨누는 것은 보고해야 하는

사건이며 경찰은 SO-06-06(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건 양식 작성 지침,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Reportable Incident Form(RIF: PD Forms 901-g and 901-h))에 따라 상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5. GO-RAR-901.01(경찰 직무용 무기 취급, Handling of Service Weapons)에 따라, MPD 경찰은 배급된 직무용 총기에 허가받지 않은 탄약을 장착하거나, 사용하거나, 또는 발사해서는 안 되며, MPD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업무용 탄약을 입수해서도 안 된다. 허가받아 사용 중인 업무용 무기에 필수 탄약 양만 장착해야 한다.

L. 금지 무기의 휴대(Carrying Prohibited Weapons)

1. 경찰은 다음을 해서는 안 된다:

- a. 정상적인 직무 수행 시, 경찰국장(Chief of Police)의 지시에 따라 MPD가 배포 또는 사용을 승인한 총기 또는 무기이외에 어떤 종류의 총기나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거나, 발사해서는 안 된다.
- b. 경찰국장이 지휘하는 MPD 승인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전에 MPD가 배포한 무기를 휴대해서는 안 된다.
- c. MPD가 배포하지 않은 무기(예, blackjack, sap, nunchaku, kenpo stick, brass knuckle, or weighted glove)를 휴대해서는 안 된다.

M. 수갑과 관련 있는 통증 및 부상(Pain or Injury Associated with Handcuffing)

1. 경찰은 수갑을 적절하게 채우더라도, 가벼운 통증이나 부상에 대한 불만(예, 피부에 낄 또는 피부 긁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2. 물리력 대상자가 수갑 착용과 관련해 가벼운 통증이나 부상을 제기하는 경우, 상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a. 상관은 불만이나 부상을 조사해 그 결과를 GO-PCA-502.07(수감자 치료 및 입원, Medical Treatment and Hospitalization of Prisoners)에 따라 PD양식 313(수감자 질병/부상 보고서, Prisoner Illness/Injury Report)에 기록해야 한다.

(1) 수사관이 물리력 대상자의 부상 또는 통증 불만이 단지 수갑을 채우고 착용한 결과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물리력과 관련된 추가 조사 또는 보고가 필요하지 않다.

예: 경찰은 저항하지 않는 물리력 대상자에게 수갑을 채운다. 물리력

대상자는 수갑이 그를 불편하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관계자는 수갑 착용과 관련한 당연한 불편함 이라고 결론짓는다.

- (2) 수사관은 물리력 대상자의 부상 또는 통증 불만이 단지 수갑을 채우고 착용한 결과가 아니거나 또는 수갑 채울 때 경찰의 물리력이 동원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GO-RAR-901.08(물리력 수사, Use of Force Investigation)에 따라 ‘물리력 사용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

예: 물리력 대상자가 오른쪽 팔목 통증을 제기한다. 수사 중, 체포경찰관은 수갑을 채우기 위해 물리력 대상자의 오른쪽 팔목을 비틀어야 했다고 말한다. 수사 관계자는 물리력 대상자의 통증이 수갑 착용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팔목을 비틀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 b. 총체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찰이 수갑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수사관은 정책 위반에 대해 적절한 상담을 실시하고 행정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관련 상해) ‘물리력 사용 수사’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예: 체포 경찰관이 저항하지 않는 물리력 대상자에게 수갑을 채우지만 이중으로 채우는 것을 소홀히 한다. 수갑이 이중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물리력 대상자는 경찰서로 이송 중 무심코 자신이 이중 잠금 장치를 채운다. 수갑을 단단히 채워 수갑자의 오른쪽 팔목에 경미한 발진이 일어났다. 이러한 부상은 수갑 착용으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물리력 사용 보고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갑 채울 때 올바르게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N. 경찰은 이 훈령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갑을 차고 있는 물리력 대상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구금상황에서 도망가려 하지 않거나 구금을 계속 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에 저항하지 않는 한(예, 물리력 대상자가 호송차량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음)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방어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물리력 대응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경찰관이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나 사람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때 사용하는 정도로 물리력 대응을 제한해야 한다.

O. MPD 행정관(Civilian Employees of the Department)

1. MPD 행정관은 MPD가 배포한 어떤 종류의 무기도 수령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된다.

참조: 행정관은 배정된 직무의 일환으로 필요시 무기를 취급할 수 있다(예, 총기 교육 행정관(civilian firearm instructors), 총기 조사 기술 행정관(civilian firearm examination technicians), 증거 기술 행정관(civilian evidence technicians))

2. 행정관은 자신이나 사람을 방어 할 경우에만 물리력을 사용해야 한다.

P. 물리력 사용 사건 보고(Reporting Use of Force Incidents)

1. 이 훈령의 Part III.13.A에서 정의한 SO-10-14(물리력 사용 사건 보고서 작성 지침,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Use of Force Incident Report(UFIR: PD Forms 901-e and 901-f))에 따라, 보고 의무가 있는 물리력 사용과 관련한 모든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할 의무가 있는 물리력 사용 사건은 SO-06-06(보고 의무가 있는 사건 양식 작성 지침,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Reportable Incident Form(RIF: PD Forms 901-g and 901-h))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예 1: 경찰이 물리력 대상자에게 OC Spray(올레오레진 캡시컴 스프레이)를 사용한다. 이것은 보고할 의무가 있는 물리력 사용이며 SO-10-14에 따라 PD 양식 901-e(보통 UFIR로 불림)를 작성해야 한다.

예 2: 경찰은 저항하는 물리력 대상자를 땅에 끌리기 위해 ‘테이크 다운 기법’(takedown technique)을 사용해 수갑을 채운다. ‘테이크 다운’ 할때와 수갑 채울 때 부상이나 통증 불만이 발생하지 않는다. ‘테이크 다운’을 사용하는 것은 보고 의무가 있는 물리력 사용 사건이며 SO-06-06에 따라 PD 양식 901-g(보통 “RIF”로 불림)를 작성해야 한다.

2. 동료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과 관련해 불만을 제기당한 것을 알고 있는 경찰은 상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V. 첨부(Attachments)

Attachment A: Decision Making Model

Attachment B: Use of Force Framework

VI. 상호 참조(Cross References)

A. Directives

1. GO-OPS-304.10(Police-Citizen Contacts, Stops, and Frisks)
2. GO-PCA-502.07(Medical Treatment and Hospitalization of Prisoners)

3. GO-RAR-901.01(Handling of Service Weapons)
4. SO-06-06(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Reportable Incident Form(RIF: PD Forms 901-g and 901-h))
5. SO-10-14(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Use of Force Incident Report(UFIR: PD Forms 901-e and 901-f))
6. SOP-16-01(Handling First Amendment Assemblies and Mass Demonstrations)

B. D.C. Official Code

1. D.C. Official Code, § 5-125(Limitation on Chokeholds)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Decision Making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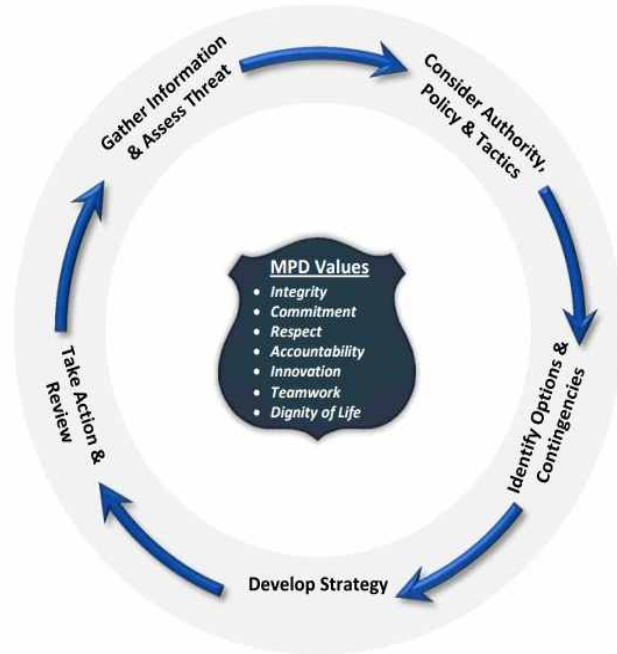
The goal of **every** encounter is
Voluntary Compliance!

Officers must **continually**

- *Gather information and assess the threat.*
- *Consider authority, policy and tactics.*
- *Identify options and contingencies.*
- *Develop a strategy.*
- *Take action and review.*

Threat Assessment Observation should include the subject's:

- *Emotional state.*
- *Resistive Tension.*
- *Early warning signs.*
- *Pre-attack postures or Gestures.*
- *Access to a Weapon.*
- *Apparent willingness to sustain injury.*



GO-RAR-901.07 (Use of Force)
Attachment A - Decision Making Model
November 3, 2017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Use of Force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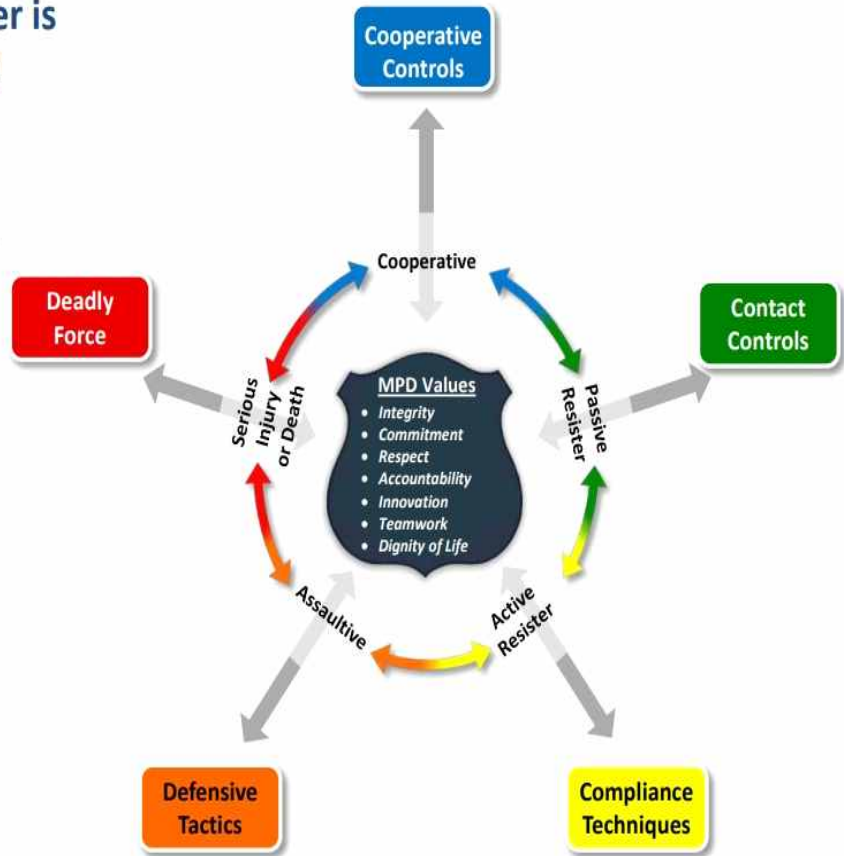
The goal of **every** encounter is **Voluntary Compliance!**

Officers must **continually**

- Gather information and assess the threat.
- Consider authority, policy and tactics.
- Identify options and contingencies.
- Develop a strategy.
- Take action and review.

Resistance and response are dynamic. The subject's behavior and the use of force to control it may escalate or de-escalate during any given altercation until complete control of the subject is achieved.

Immediately summon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and render first aid as soon as the scene is safe.



GO-RAR-901.07 (Use of Force)
Attachment B - Use of Force Framework
November 3, 2017